

#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1. 9.

제 출 자 :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5.)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區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안 제3조~제5조)
- 나.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3. 9. 27. ~ 10. 17.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수정동의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  
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요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을 단위로 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 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장

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조사·연구 의뢰)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협력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관 계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대구서구042			
정책명	대구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부서명	기획예산실		
	담당자명	남순성	전화번호 053-663-21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실)	<p>■ 제·개정 목적</p> <p>「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5.)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p> <p>■ 제·개정 주요 내용</p> <p><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안 제3조 ~ 안 제5조)</p>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p> <p><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p> <p><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 해당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5.)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p> <p>·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안 제3조 ~ 안 제5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7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등임.</p> <p>· 안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점검포인트 3-1과 관련이 있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에 대한 명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거).</p> <p>· 이에 제정안 제9조 1항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에 대한 명시를 제안함.</p>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07 235 943 353">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td> <td data-bbox="943 235 1378 353">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 성한다. ...이하 생략         </td> </tr> </table>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 성한다. ...이하 생략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 성한다. ...이하 생략		
<b>검토의견</b> <b>반영계획서</b>	년 월 일 까지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10월 05일</p> <p style="text-align: center;"><b>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황연희/053-663-2544)</p> <p><b>기획예산실장 귀하</b></p>			